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5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통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안 제2조 및 별표2)
-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적용(안 제4조 및 별표1)
 - 숙박비 · 서울특별시 : 당초) 70,000원 → 변경) 100,000원
 - 광역시 : 당초) 60,000원 → 변경) 80,000원
 - 그밖의지역 : 당초) 50,000원 → 변경) 70,000원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 상향(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4조, 제6조)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3. 15. ~ 4. 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4. 19. 원안의결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2배”를 각각 “5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수”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의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 -- 따라 -----.</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 5배 -----.</p>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6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4. 19.)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의안번호	자치법규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14	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경제마케팅과	서면
2023-15	진도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총무과	서면
2023-16	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총무과	서면
2023-17	진도군 공무원 어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세무회계과	서면
2023-18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의결	세무회계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도군



수신자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법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전일 2023. 4. 20.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5013

(2023. 4. 20.)

집수 세무회계과-12081

(2023. 4. 20.)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ON)

문서관리카드 세무회계과-12081 1/1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1)	진도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 과 장	○개정이유 - 상위법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통보와 관련, 개정사항을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 - 국내여비 지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적용	양한이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4. .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비(註)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희 수	김희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흥 섭	우흥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월	허수월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허상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전	허규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전	박계전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용	황규용		
"	진 도	개 속 산 과 장	장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정기문		
"	분 화	예 술 재 육 과 장	박 윤 수	박윤수		
"	진 선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제 필	장제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업 단 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3. 작성자

- 세무회계과 행정8급 김가은

세무회계과장

박 계 천



제43호 진도신비리비당길속제 2023. 4. 20.(목) - 4. 22.(토)



진도군



수신 세무회계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세무회계과-10127(2023. 4. 5.)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윤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김영 2023. 4. 5. 오승민
-----	-----	--------	-----	--------	-----------------------

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4416	(2023. 4. 5.)	접수	세무회계과-10178	(2023. 4. 5.)
----	-------------	---------------	----	-------------	---------------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존(ON)

문서관리카드 세무회계과-10178 1/1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군 공무원 예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께서는 게시판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수

수신자 노.군.도

주무관	김가은	관리팀장	박상훈	세무회계과장	전광 2023. 3. 15. 박계현
협조자					
시행	세무회계과-7556	(2023. 03. 15)	견수		
부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활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336	팩스번호	061-540-3396	/ JINDO158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번호	세무회계과-
보존기간	
경계일자	2023. 3.
공개구분	공개

담당지	장외담당	세무회계과장	부군수	군수	전 세
김가은	박성철	박계원	이호성	김영호	
협 조	법무의회담당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이우진 예산담당 강영준 총무과장 이계원 행정담당 이현민				

진도군 공무원 예비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진도군
 [세무회계과]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계획

1. 개정이유

- 상위법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 통보와 관련하여, 「진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안 제2조 및 별표2)
-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적용(안 제4조 및 별표1)
 - 숙박비 · 서울특별시 : 당초) 70,000원 → 변경) 100,000원
 - 광역시 : 당초) 60,000원 → 변경) 80,000원
 - 그밖의지역 : 당초) 50,000원 → 변경) 70,000원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 상향(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등 정비(안 제4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5. 향후 추진일정

- 2023. 3.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23.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5. : 의회 제출 및 심의
- 2023. 5.(예정) : 공포 및 시행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6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함.
- 영업을 중단하는 동절기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터 활성화 지원(안 제10조 신설)
 -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 공공요금(안 제21조 단서 신설)
 -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3. 29. ~ 4. 18.(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4. 26. 원안의결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입점자의 의무”를 삭제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장터 사용관련 비용”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권한의 위임 등”을 삭제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장터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입점자의 의무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3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장터 사용관련 비용

제18조(종전의 제17조) 제2항 단서 중 “제13조제3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권한의 위임 등

제29조(중전의 제28조)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 단서 규정은 2023년 1월에 고지·납부한 전기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판매품목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업종 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점자가 업종 전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u>제11조</u> 제1항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9조(판매품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제12조</u> ----- -----.</p> <p><u>제10조(장터 활성화 지원)</u> 군수는 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p>
<p><u>제10조 · 제11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입점자의 의무</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11조 · 제12조</u>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입점자의 의무</u></p>
<p><u>제12조(사용권)</u> ①·② (생략)</p> <p>③ 피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상속인의 사용허가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하며, <u>제10조제2항</u>에 따라 사용허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u>제13조(사용권)</u>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제11조제2항</u> -----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13조 ~ 제16조</u> (생략)</p>	<p><u>제14조 ~ 제17조</u>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p>

제4장 장터 사용관련 비용

<신 설>

제17조(사용료) ① (생 략)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입한 자가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잔여금을 반환한다.

③·④ (생 략)

제18조·제19조 (생 략)

제20조(공공요금) 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개별 전기료, 공동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기타시설의 사용료는 입점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1조 (생 략)

제5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신 설>

제22조 ~ 제26조 (생 략)

제6장 권한의 위임 등

<삭 제>

제4장 장터 사용관련 비용

제1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4조제3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제21조(공공요금) -----

다만,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삭 제>

제5장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

제23조 ~ 제27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27조 (생 략)

제28조(기타 사용자)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입점자 이외의 자가 장터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제9조부터 제21조 까지를 적용한다.

제6장 권한의 위임 등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9조(기타 사용자) -----

----- 제22조

-----.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진도군



수신 경제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7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7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4. 26.)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치 법 규 명	심의회과	소관부서	비고
2023-19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유진미 법무의회위원장 박원주 기획홍보실장 전결 2023. 4. 27.
 협조자 허수철

시행 기획홍보실-5278 (2023. 4. 27.) 접수 경제에너지과-16354 (2023. 4. 27.)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를 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81-540-3047 팩스번호 081-540-3049 / jindo8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경제에너지과-16354 1/1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19	진도 읍들북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에너지 과 장	○개정이유 - 방문객에게 상품권 등 경품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하기 위함 -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요금 지원하기 위함 ○주요내용 - 예산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상품권 등 경품 제공 -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요금 지원	추천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4. 26.

구 분	직	위	성 명	가(의)	부(否)	비고(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회 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흥 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허상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원	박계원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웅	황규웅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판 방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박윤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박병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박남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4. 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 행정9급 박준영

경제에너지과장 이 용 복 (박준영)



진도군



수신 경제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안전생활지원과-32232(2023. 4. 5.)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3A전남진도020)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진결 2023. 4. 12. 오승민
-----	-----	--------	-----	--------	------------------------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5502	(2023. 4. 12.)	접수	경제에너지과-14325	(2023. 4. 12.)
----	-------------	----------------	----	--------------	----------------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경제에너지과-14325 1/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20			
정책명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경제에너지과		
	담당자명	박준영	전화번호	061-540-64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경제에너지과)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검토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경제에너지과장 귀하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과 총무과장은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 례 명 :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 나. 예고기간 : 2023. 3. 29.~4. 18.(20일간)
-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 라. 의견제출 :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 ☎ 061-540-6423)

- 붙임 1. 2023년3월28일-a0-공고결재 1부.
2.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수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관	박준영	상권활성화팀	장	박은경	경제에너지과	전결 2023. 3. 28.
협조자					장	이용복

시행 경제에너지과-11990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 http://www.jindo.go.kr
상권활성화팀

전화번호 061-540-6423 팩스번호 061-540-6449 / junyeong26@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

문서번호	경제에너지과	담당자	상권활성화 팀 장	경제에너지 과 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보존기간	영구	박준영	박원경	이용복	이충섭	김영욱	
결재일자	2023. 3.	협조					
공개구분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조정실장 허두식			

**진도 올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I 개정 사유

- 진도 울돌목 주말장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 영업을 중단하는 동절기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을 지원근거 마련

II 개정 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객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제10조)
- 휴장기간동안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21조)

[참고] 고문변호사 자문

- 1) 조례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 지원 ⇒ 가능
- 2) 기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한 소급 지원 ⇒ 가능

※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고, 주말장터 입점자들이 휴장기간에도 전기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 소급적용 허용될 수 있음.

III 개정 조례안

- 조례안: 붙임

III 향후 일정

- 2023. 3.: 입법예고
- 2023.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5.: 의회 상정(5월 중 임시회)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7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장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수당 등 지급(안 제12조제2항)
 - (현행) 사망위로금 20만원의 지급
 - (개정)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3. 29. ~ 2023. 4. 2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5. 1. 원안의결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200,000원”을 “5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생략)</p> <p>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u>200,000원</u>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p>	<p>제12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style="text-align: right;">----- <u>500,000원</u>-----</p> <p>-----.</p>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5. 1.)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치법규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20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1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3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도군



공무직 류진미 발무의회위원장 박원주 기획홍보실장 전령 2023. 5. 2.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6563 (2023. 5. 2.)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를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047 팩스번호 061-5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28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 ○주요내용 - 사망위로금 인상 : (현행)20만원(개정)50만원	단안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회 수	김회수		
부 의 장	부	군	우 흥 섭	우흥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허규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박계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응	황규응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업 단 장	박 남 규	박남규		
"	시 설	관 리 사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사망위로금 인상에 대한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작성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7급 장원서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이 미 예 (서명)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주민복지과-10365(2023. 3. 27.)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3A전남진도016)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오승민	전결 2023. 3. 30.
-----	-----	--------	-----	--------	-----	-----------------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3514	(2023. 3. 30.)	접수	주민복지과-10840	(2023. 3. 30.)
----	-------------	----------------	----	-------------	----------------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 전남진도016			
정책명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장원서	전화번호	061-540-31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30일 진도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은하/061-540-1265) 주민복지과장 귀하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기간연장)

1.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 례 명 :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당초 : 2023. 3. 29. ~ 2023. 4. 17(19일간)
 - 연장 : 2023. 4. 27. ~ 2023. 4. 28(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수신자 노, 료, 도

주무관	장원서	복지정책팀장 허장무	주민복지과장 이미예	전결 2023. 4. 24.
-----	-----	------------	------------	-----------------

협조자

시행 주민복시과-13367 (2023. 4. 24.)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103 팩스번호 061-540-3196 / seo1878@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번호	주민복지과-10190
보존기간	5년
공개여부	공개
시행일자	2023. 3. 23

담당자	복지정책팀장	주민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장원서	허장우	이시예	이종성	김종욱	
협 조	법무의회팀장 백현우		기획예산과장 허우진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진도군
(주민복지과)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장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명예수당 등 지급(안 제12조 2항)
 - (현행) 사망위로금 20만원의 지급
 - (개정)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 개정조례안

- 조례안: 붙임

□ 향후 추진일정

- '23. 3. : 조례안 입법예고
- '22. 4. 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5. 한.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8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자치법규 상 장애차별표현 수정 권고에 따라 해당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 제2조제5호)
 - (신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제1호)
 - (현행)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개정)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3. 29. ~ 2023. 4. 2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5. 1. 원안의결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제1호 중 “정신장애로 인하여”를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p> <p><u><신 설></u></p>	<p>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p> <p>----- ----- ----- ----- -----.</p> <p>5. 「<u>긴급복지지원법</u>」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p>
<p>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p> <p>1. <u>정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5. (생략)</p>	<p>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p> <p>----- ----- ----- -----.</p> <p>1. <u>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p> <p>-----</p> <p>2. ~ 5. (현행과 같음)</p>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8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5. 1.)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치법규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20	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1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23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안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각 1부. 끝.

진도군



공무직 류진이 법무의회의장 박원주 기획홍보실장 권영 2023. 5. 2.
허수철

협조자

시행 기획홍보실-5553 (2023. 5. 2.) 접수

우 6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640-3047 팩스번호 061-640-3049 / jindo660@korea.kr / 비공개(5)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21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개정이유 - 유사성격 위원회 통합하여 심의기능 수행 - 자치법규 상 장애차별표현 수정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신설 - 장애차별적 표현 수정	유연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회 수	김회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홍 섭	우홍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허규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박계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응	황규응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박남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미첨부 근거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발생 비용 없음

3. 작성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7급 장원서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이 미 예 (서명)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주민복지과-10366(2023. 3. 27.)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3A전남진도014)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결 2023. 4. 3. 오승민
-----	-----	--------	-----	--------	-----------------------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3959	(2023. 4. 3.)	접수	주민복지과-11081	(2023. 4. 3.)
----	-------------	---------------	----	-------------	---------------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14			
정책명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장원서	전화번호	061-540-31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2. 성별특성 반영에 해당함.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의 결과, 자치법규 상 장애인차별표현에 대한 수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 '정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을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수정하는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이와 같은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시된 성별특성 반영과 관련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 자체개선안 내용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u>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5. (현행과 같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3월 31일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연장)

1.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공고하니,
2.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께서는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조 례 명 :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예고기간
 - 당초 : 2023. 3. 29. ~ 2023. 4. 17(19일간)
 - 연장 : 2023. 4. 27. ~ 2023. 4. 28(1일간)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끝.

진도군수

수신자 노, 로, 도

주무관	장원서	복지정책팀장	허장무	주민복지과장	전결 2023. 4. 24. 이미예
협조자					
시행	주민복지과-13366			접수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3103	팩스번호	061-540-3196	/ seo1878@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7

문서번호	주민복지과-1011	담당자	복지정책팀장	주민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보존기간	5년	장원서	리광주	이시예	이동성	김주영	
공개여부	공개						
시행일자	2023. 3. 23	협 조	법무의회팀장	백현주	기획예산과장	이두성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진도군
 (주민복지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유사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자치법규 상 장애차별표현 수정 권고에 따라 해당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안 제2조 제5호)
 - (신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의 해촉 (안 제9조 제1호)
 - (현행)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개정)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개정조례안

- 조례안: 붙임

□ 향후 추진일정

- '23. 3. : 조례안 입법예고
- '22. 4. 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5. 한.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39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공자 지위의 승계가 없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와 그 가족의 명예선양을 위해 배우자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 제1호(현행) 월 12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개정)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 제2호(현행) 사망 위로금 20만원의 지급
(개정)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 제3호(신설)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제4항)
 - (신설) 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3. 29. ~ 2023. 4. 2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5. 1. 원안의결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3.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 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p> <p><u>1. 월 12만원의 명예수당 지급</u></p> <p><u>2. 사망 위로금 20만원의 지급</u></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지원사업) ----- ----- ----- ----- ----- -----</p> <p><u>1.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u></p> <p><u>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u></p> <p><u>3.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u></p>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2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설 -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 ○주요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의 배우자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인상 : (현행)20만원(개정)50만원	승인 의견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회 수	김회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흥 섭	우흥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제 남	차제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허규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박계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응	황규응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박정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	농 수 산 유 통	사 업 단 장	박 남 규	박남규		
"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 인상 : 조례안 제4조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280명(추정)
- 최근 5년간 참전유공자 사망인원을 통한 연간 사망자 25명(추정)
- 추계 결과 : 5년간 산출 = 1,238,500천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80명 × 70,000원 × 12월 × 5년 = 1,176,000천원
 - 사망위로금 : 25명 × 500,000원 × 5년 = 62,500천원

나. 추계 결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조례개정 전 비용	383,280	383,280	383,280	383,280	383,280	1,916,400
추가소요액	247,700	247,700	247,700	247,700	247,700	1,238,5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 수입

작 성 자 : 주민복지과장 이 미 예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주민복지과-10367(2023. 3. 27.) 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불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통보서 (2023A전남진도015) 1부.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전길 2023. 4. 3. 오승민
-----	-----	--------	-----	--------	-----------------------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3958	(2023. 4. 3.)	접수	주민복지과-11082	(2023. 4. 3.)
----	-------------	---------------	----	-------------	---------------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전남진도015		
정책명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부서명	주민복지과	
	담당자명	장원서	전화번호 061-540-310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3월 2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주민복지과)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개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입관)	<p>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input type="checkbox"/>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4조(지원사업)은 성별영향평가 지표 2. 성별특성 반영에,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4. 성별통계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이에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이후 그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체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에는 '성별'란을 추가하여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이와 같은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에 제시된 성별특성성 반영과, 성별통계 구축과 관련한 자체개선안에 동의함. </p> <p> * 자체개선안 1 - 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u>1.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u> <u>2. 사망 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u> <u>3.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p> <p> * 자체개선안 2 - [별지 제2호서식]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u>성별'란을 추가</u>하여 성별분리통계 구축 </p>		

7

문서번호	주민복지과-10168
보존기간	5년
공개여부	공개
시행일자	2023. 3. 23

담당자	복지정책팀장	주민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장원서	최광우	이시예	이호성	김은숙	
협 조	법무의회팀장 박현주		기획홍보실장 최유진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계획


진도군
 (주민복지과)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유공자 지위의 승계가 없어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와 그 가족의 명예선양을 위해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장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사업(안 제4조, 1호, 2호, 3호)
 - (현행) 1. 월 12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 (개정) 2.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 (현행) 2. 사망 위로금 20만원의 지급
 - (개정) 2.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지급)
 - (신설) 3.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및 시기(안 제5조 4항)
 - (신설) ④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한다.
- 부칙(적용례)
 -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1일 이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에 한하여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이때,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인 배우자에 한한다.

개정조례안

- 조례안: 붙임

향후 추진일정

- '23. 3. : 조례안 입법예고
- '22. 4. 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 5. 한.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안

의안 번호	2023-40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조례 내 장애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제1항제7호)
 -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제3조의3제1호)
 -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0조제1호)
 -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3조제6항제1호)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4. 5. ~ 2024. 4. 2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 장애차별적 표현 해당 문구 등 단순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5. 1. 원안의결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립민속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신체나 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로 한다.

제2조(「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3조(「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4조(「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5조(「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심신장애로”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 확정된”을 “장애정도가 결정된”으로 한다.

제6조(「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장애의 정도로 인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단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단원 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u>신체나 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u></p>	<p>제10조(단원의 해촉)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u> -----.</p>

2.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u></p> <p>2. ~ 5. (생략)</p>	<p>제3조의3(위원의 해촉) ----- ----- ----- ----- -----.</p> <p>1. <u>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u></p> <p>2. ~ 5. (현행과 같음)</p>

3.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3. (생략)</p>	<p>제20조(위원의 해촉) ----- ----- ----- -----.</p> <p>1. <u>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p> <p>2. 3. (현행과 같음)</p>

4.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생략)</p> <p>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4. (생략)</p>	<p>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u>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u> -----</p> <p>2. ~ 4. (현행과 같음)</p>

5.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4조(해임) ① (생략)</p> <p>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단원이 <u>심신장애</u>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5. (생략)</p>	<p>제4조(해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신체적, 정신적 질환</u> <u>으로 장기간</u> ----- -----</p> <p>4. 5.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p> <p>1. (생략)</p> <p>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u>장애 등급이</u> <u>확정된</u> 날</p> <p>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5조(재해보상)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장애</u> <u>정도가 결정된</u>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6.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생략)</p> <p>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질병 또는 <u>심신장애</u>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p> <p>2. ~ 4. (생략)</p>	<p>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 ----- ----- -----</p> <p>1. ----- <u>장애의 정도로 인해</u> -----</p> <p>2. ~ 4. (현행과 같음)</p>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번호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23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안	주민복지과장	○개정이유 - 진도군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각 조례 내 장애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	승인의결

위와 같이 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가(可)	부(否)	부(否)일 경우 사유
의 장	군	수	김 희 수	김희수		
부 의 장	부 군	수	우 흥 섭	우흥섭		
위 원	기 획	홍 보 실 장	허 수 철	허수철		
"	인 구 정 책	실 장	차 계 남	차계남		
"	안 전 생 활	지 원 과 장	허 상 무	허상무		
"	총 무	과 장	허 규 진			
"	세 무 회 계	과 장	박 계 천	박계천		
"	민 원 봉 사	과 장	허 승 목	허승목		
"	수 산 지 원	과 장	황 규 응			
"	진 도 개 축 산	과 장	강 경 화			
"	해 양 항 만	과 장	김 창 대	김창대		
"	경 제 에 너 지	과 장	이 용 복	이용복		
"	주 민 복 지	과 장	이 미 예	이미예		
"	가 족 행 복	과 장	오 승 민	오승민		
"	관 광	과 장	정 기 문	정기문		
"	문 화 예 술 체 육	과 장	박 윤 수	박윤수		
"	건 설	과 장	박 재 현	박재현		
"	도 시 개 발	과 장	박 정 현			
"	환 경 수 질	과 장	박 병 찬			
"	산 림 휴 양	과 장	장 재 필	장재필		
"	보 건 소	장	조 기 주			
"	농 업 기 술 센 터	장	김 상 득	김상득		
"	농 수 산 유통 사업 단 장		박 남 규			
"	시 설 관 리 사업 소 장		김 영 환			
"	국 민 해 양 안 전 관 장		이 석 찬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고자 해당 문구 등 단순 변경으로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3. 작성자

- 소 속: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직 급: 지방사회복지서기
- 성 명: 정 수 선

주민복지과장 이 미 예 

제43회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2023. 4. 20.(목) - 4. 22.(토)



진도군



수신 주민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주민복지과-11289(2023. 4. 4.) 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진도군수

관인생략

공무직 이은하 가족정책팀장 박지현 가족행복과장 진결 2023. 4. 4.
오승민

협조자

시행 가족행복과-14269 (2023. 4. 4.) 접수 주민복지과-11308 (2023. 4. 4.)

우 58915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http://www.jindo.go.kr>

전화번호 061-540-1265 팩스번호 061-540-0504 / leh13315@korea.kr / 대국민 공개

내 삶을 지키는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온(ON)!

문서관리카드 주민복지과-11308 1/1

전라남도 진도군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주민복지과	성명	이미예
				전화번호	061-540-3101
	담당자	부서명	주민복지과	성명	정수선
				전화번호	061-540-311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23-04-04 ~ 2023-04-06		(3 일간)	
	입법예고	2023-04-05 ~ 2023-04-25		(20 일간)	
	법제담당 등	2023-04-05 ~ 2023-04-25		(20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기록물, 물품, 수당, 보수,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수수료 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국호·국기·연호, 전례, 국경(정부가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제납처분 조항, 효력 발생 기간 및 기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일몰조항 관련 기준년도의 변경, 삭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문서번호	주민복지과 11265
보존기간	5년
공개여부	공개
시행일자	2023. 4. 4.

담당자	장애인복지팀장	주민복지과장	부 군 수	군 수	결 재
정수선	백현우	이이예	이홍섭	김영욱	
협 조	법무의회팀장 백현우		기획홍보실장 이우진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 계획



진 도 군
(주민복지과)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 계획

□ 개정이유

- 진도군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각 조례 내 장애차별적 표현 및 용어 정비
 -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10조제1항제7호)
 -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안 제3조의3제1호)
 - 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제20조제1호)
 - 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안 제5조제2항제1호)
 - 진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 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안 제23조제6항제1호)

□ 개정조례안

- 붙임

□ 향후 추진일정

- '23. 4. 한 : 조례안 입법예고
- '23. 4. 한.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5. 한. : 의회 의결 및 조례 공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023-41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에 매입 및 취득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 농업기술센터 꽃묘 확대 생산 신규 부지 매입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2023년도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83 2	412,439 1,844	2,305,726 620,000				83 2	412,439 1,844	2,305,726 62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81 2	406,571 1,844	2,278,608 620,000				81 2	406,571 1,844	2,278,608 620,000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2	5,868	27,118				2	5,868	27,118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진도읍 동외리 267	1,088	89,270	2023.6.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	토지
	목	진도읍 동외리 268-13	2,059	418,975			
	답	진도읍 동외리 268-15	72	9,684			
	답	진도읍 동외리 1027	1,374	419,619			
2	답	의신면 돈지리 471-1	3,266	19,237	2023.7.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
	답	의신면 돈지리 471-2	3,059	19,976			
	전	의신면 돈지리 472-1	1,202	7,850			
	답	의신면 돈지리 473	1,385	6,524			
	답	의신면 돈지리 474-1	4,251	22,233			
	전	의신면 돈지리 479	460	2,852			
	전	의신면 돈지리 482	1,895	11,162			
	전	의신면 돈지리 483	603	3,552			
	답	의신면 돈지리 530	1,524	8,977			
	답	의신면 돈지리 531	678	4,204			
	답	의신면 돈지리 532	291	1,901			
	전	의신면 돈지리 469	347	2,044			
	답	의신면 돈지리 470	1,070	6,634			
	답	의신면 돈지리 526	4,205	28,426			
	답	의신면 돈지리 528	780	3,674			
	전	의신면 돈지리 527	1,299	7,898			
답	의신면 돈지리 529	569	2,823				
답	의신면 돈지리 475	1,025	5,535				
3	답	군내면 분토리 1722-1	2,975.6	143,120	2023.6.	농업기술센터 꽃묘 확대 생산	토지
	답	군내면 분토리 1722-2	1,390.5	66,880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

연번	제 목	심 의 요 지	제안부서
1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67 외 3필지 - 면 적 : 토지 4,593㎡ - 대장가액(감정) : 937,548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
2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의신면 돈지리 471-1 외 17필지 - 면 적 : 토지 27,909㎡ - 대장가액 : 165,502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지원팀)
3	농업기술센터 꽃묘 확대 생산 신규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군내면 분토리 1722-1 외 1필지 - 면 적 : 토지 4,366.1㎡ 하우스 5동 2,790㎡ - 대장가액(감정) : 210,000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꽃묘 확대 생산 및 보급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1.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1. 제안이유

-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 명소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m ²)	소유자	감정평가액 (천원)	비 고
계				4,593		937,548	
1	토지	진도읍 동외리 267	전	1,088	김정자 박철 박일	89,270	
2		진도읍 동외리 268-13	목	2,059	박재신	418,975	
3		진도읍 동외리 268-15	답	72	박재신	9,684	
4		진도읍 동외리 1027	답	1,374	김옥례	419,619	

3. 주관과 의견

-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I 위치도(위성사진)



II 현장사진



진도읍 동외리 267번지



진도읍 동외리 268-13, 268-15번지



진도읍 동외리 1027번지

2.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

1.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 신규조성을 위하여 의신면 돈지리 471-1 외 17필지를 매입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m ²)	재산가액(천원)	비 고	
계		18필지		27,909	165,502		
1	토지	의신 돈지	471-1	답	3,266	19,237	
2			471-2	답	3,059	19,976	
3			472-1	전	1,202	7,850	
4			473	답	1,385	6,524	
5			474-1	답	4,251	22,233	
6			479	전	460	2,852	
7			482	전	1,895	11,162	
8			483	전	603	3,552	
9			530	답	1,524	8,977	
10			531	답	678	4,204	
11			532	답	291	1,901	
12			469	전	347	2,044	
13			470	답	1,070	6,634	
14			526	답	4,205	28,426	
15			528	답	780	3,674	
16			527	전	1,299	7,898	
17			529	답	569	2,823	
18			475	답	1,025	5,535	

3. 주관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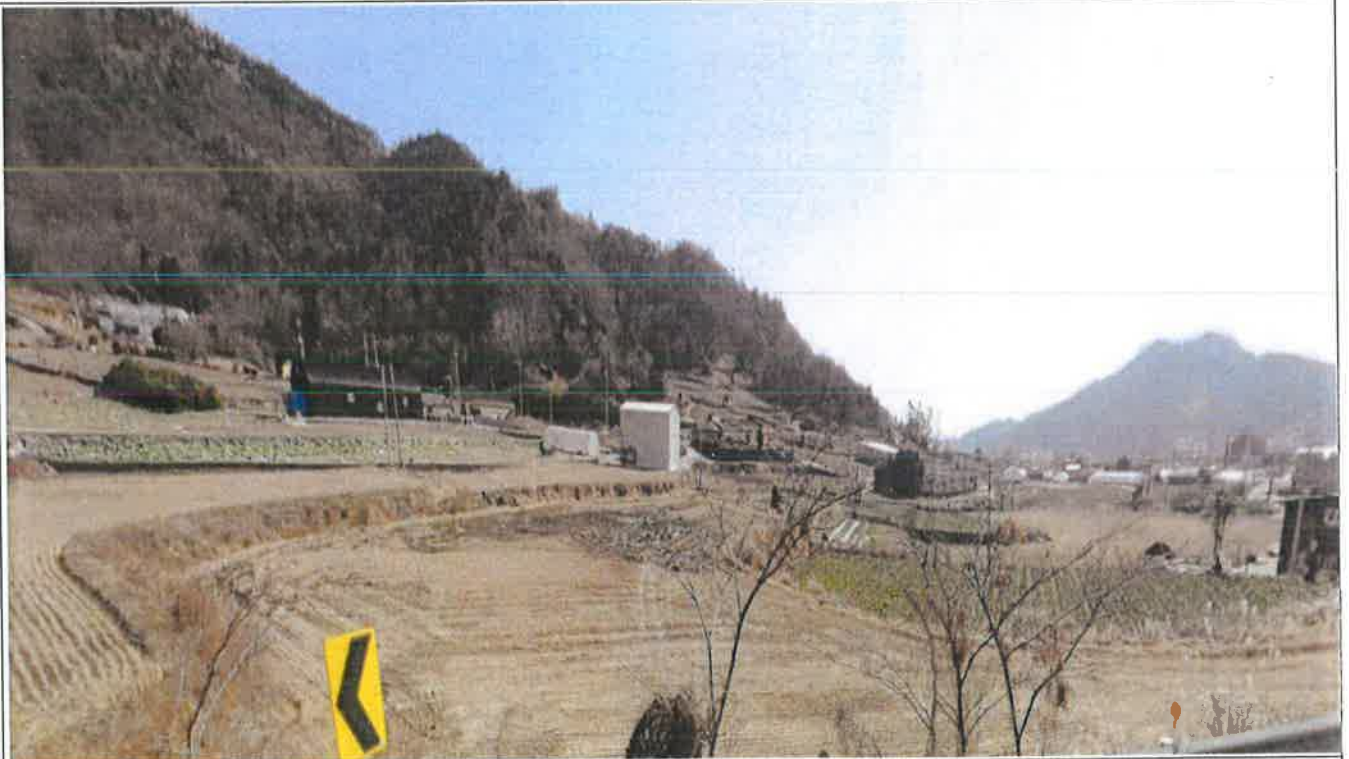
-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의신면 돈지리 일원의 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위 치 도(위성사진)





정면 사진



측면 사진

3. 꽃묘 확대 생산 신규 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농업기술센터 보유 토지 내 시설물이 포화상태로 신규기반 시설(꽃묘생산시설, 실증포 등) 확대에 한계가 있음
- 군수 지시사항(2023-33) 『시설하우스 농가 대상 꽃 재배농가 육성 방안 수립』 및 365꽃피는 진도 만들기를 위한 꽃묘의 확대 생산·보급을 위한 신규 토지를 취득(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 꽃묘 생산 기반 구축 및 실증 시험포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천원)	비고
계				4,366.1	210,000	
1	토지	군내면 분토리 1722-1	답	2,975.6	143,120	하우스 (3동/1,674㎡)
2		군내면 분토리 1722-2	답	1,390.5	66,880	하우스 (2동/1,116㎡)

3. 주관과 의견

- 농업기술센터 보유 토지 내 시설물이 포화상태로 신규 기반 시설 확대에 한계가 있음
 - ⇒ 신규요구 시설 : 꽃묘생산시설, 고품미생물 배양시설, 실증포장, 체험시설, 농기계 교육 실습 등

- '23년 농업기술센터 자체 꽃묘생산 40만본 계획·생산중이나 확대 생산을 위한 부지 등 생산시설이 추가로 요구됨
-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한 군내면 분토리 1722-1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연중 계절별 꽃묘 생산시설 및 농촌지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함

I 위치 도(위성사진)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6호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진도개축산과장	- 위 차 : 진도읍 동외리 267 외 3필지 - 면 적 : 토지 4,593㎡ - 대장가액(감정) : 937,548천원 - 소유자 : 개인 - 목 적 : 진도개 테마파크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ㄱ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원장	우 흥 설	가		
2	부위원장	박 계 천	가		
3	위원	허 수 철	가		
4	위원	이 미 예	가		
5	위원	정 동 조	가		
6	위원	이 재 식	가		
7	위원	이 예 순	가		
8	위원	이 상 립	가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7호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문화예술체육관광	- 위 치 : 의신면 둔지리 471-1 외 17필지 - 면 적 : 토지 27,909㎡ - 대장가액 : 165,502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진도군 파크골프장 조성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5. 1.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유
			가(可)	부(否)	
1	위원장	우 흥 설	가		
2	부위원장	박 계 천	가		
3	위원	허 수 철	가		
4	위원	이 미 예	가		
5	위원	정 동 조	가		
6	위원	이 재 식	가		
7	위원	이 애 순	가		
8	위원	이 상 립	가		

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서

□ 심의결과

구분	제 목	신청자	심 의 요 지	심의결과
2023-8호	농업기술센터 꽃묘 확대 생산 신규 부지 매입	농업기술센터소장	- 위치 : 군내면 분토리 1722-1 외 1번지 - 면적 : 토지 4,366.1㎡ 하우스 5동 2,790㎡ - 대상가액(감정) : 210,000천원 - 소유자 : 개인 - 목적 : 꽃묘 확대 생산 및 보급	가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23. 5. 1.

구분	직 위	성 명	서 명		부(否)일 경우 사 유
			가(可)	부(否)	
1	위원장	우 홍 섭	가		
2	부위원장	박 계 천	가		
3	위원	허 수 철	가		
4	위원	이 비 예	가		
5	위원	정 동 조	가		
6	위원	이 재 식	가		
7	위원	이 애 순	가		
8	위원	이 상 립	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023-42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지역 상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기 관 명: 전남신용보증재단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설 립 일: 2001. 7. 31.
- 주요기능: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출연기간: 2023. 5. ~ 자금 소진 시 까지

다. 출연금액: 1억원

라. 출연목적: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 전액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4. 주무부서 의견

- 소상공인의 금융 정책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2023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계획

문서번호	경제에너지과/3945	담당자	지역경제팀	경제에너지과장	부군수	군수	결 재	
보존기간		서자은	박현아	이명복	이종업	김민석		
결재일자	2023. 4. 11.	협조						
공개구분	비공개(5)	예산팀장 장영호 기획홍보실장 허수진						

2023년 제2회추경 예산편성을 위한 지역경제팀 업무추진 계획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용	보조비율(%)
계		132,820		
1	착한가격업소지원(변경)	5,180	7개소×740천원	국 30,도 21,군 49
2	디지털소상공인1만양성	15,000	30개소×500천원	도 30, 군 70
3	착한가격업소지원 (7,140천원)	4,440	6개소×740천원	신규 자체사업 (정부평가대비)
		1,000	20개소×50천원 (쓰레기봉투)	
		1,000	20개소×50천원 (상하수도요금)	
		700	7개소×100천원	
4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	3,000	홍보물 1회	신규 자체사업
5	기관단체 간담회 및 캠페인	2,500	313천원×8회	22년 지역경제 활성화 시상금
6	소상공인 특례보증	100,000	특례보증 1회	22년 지방물가평가 특교세 7천만원포함

2023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계획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100% 채무보증을 통한 융자지원으로 실질적 금융 혜택 제공

I 지원근거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II 사업개요

- (출연금액) 1억원
- (출연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보증규모) 10억원(출연금의 10배)
- (사업기간) 2023. 5.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사업내용) 진도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신용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도내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현황(2023. 4. 기준)

(단위: 원)

구분	연번	시군명	출연일	출연금	비고
2023년	계	6개		956,000,000	
	1	완도군	2023-03-02	100,000,000	
	2	순천시	2023-03-10	150,000,000	
	3	광양시	2023-03-13	200,000,000	
	4	함평군	2023-03-17	106,000,000	
	5	해남군	2023-03-31	300,000,000	
	6	영광군	2023-04-03	100,000,000	

구분	연번	시군명	출연일	출연금	비고
2022년	계	11개		2,100,000,000	
	1	해남군	2022-01-28	200,000,000	
	2	완도군	2022-01-28	100,000,000	
	3	광양시	2022-02-09	200,000,000	
	4	순천시	2022-02-14	150,000,000	
	5	함평군	2022-03-21	100,000,000	
	6	목포시	2022-04-01	300,000,000	
	7	여수시	2022-04-08	150,000,000	
	8	진도군	2022-04-12	100,000,000	
	9	곡성군	2022-06-15	50,000,000	
	10	여수시	2022-09-08	350,000,000	
	11	해남군	2022-09-08	200,000,000	2회
12	광양시	2022-09-14	200,000,000		

Ⅲ 보증운용

- (보증대상)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진도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단,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이차지원(이차보전) 또는 운영자금을
수혜중인 경우 보증지원 제외
-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포함)
 - 보증심사운용요령 제5조 제1항 보증억제 기업
 - 재단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CCC등급 이하인 기업
 - 회생지원보증 취급 후 1년 이내의 신규보증 신청기업
 - 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內 지원 제외 업종
- (대상채무) 운전자금
-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3천만원(기보증 포함)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단, 지자체 및 정부 정책자금 연계 시 해당 정책자금 기간 적용

- (보증비율) 전액보증
- (보증료율) 연 0.8% 고정

Ⅲ 추진계획

- (업무협약)
 - 협약시기: 2023. 5.
 - 협약기관: 진도군 ↔ 전남신용보증재단
 - 협약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 (업무지원)
 - 시 행 일: 매주 목요일 신용보증재단 출장 상담
 - 장 소: 농협은행 진도군지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운림명승지구 관광활성화사업(문화공원)]

의안 번호	2023-43
----------	---------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진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입안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배경

- 사천리 일원의 지역 문화자원 및 역사자원을 아우르는 상징성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기여
- 운림산방, 쌍계사, 침찰산 등을 연계한 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 도모

나. 계획의 범위

- 위치 :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80번지 일원
- 대상 : 군계획시설(문화공원 1개소) 신설
 - 공 원 : A=10,178m²

다. 주요내용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문화공원	의신면 사천리 80번지 일원	-	증)10,178	10,178		

3. 추진경과 및 계획

- 2023. 01. 11. ~ 01. 25. : 주민 의견 청취
- 2023. 05.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3. 06. : 진도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3. 06.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가. 현황분석

- 의신면 사천리 80번지 일원의 공원 결정 예정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사 문화미관지구로 군도 15호선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음

나. 변경(안)

- 공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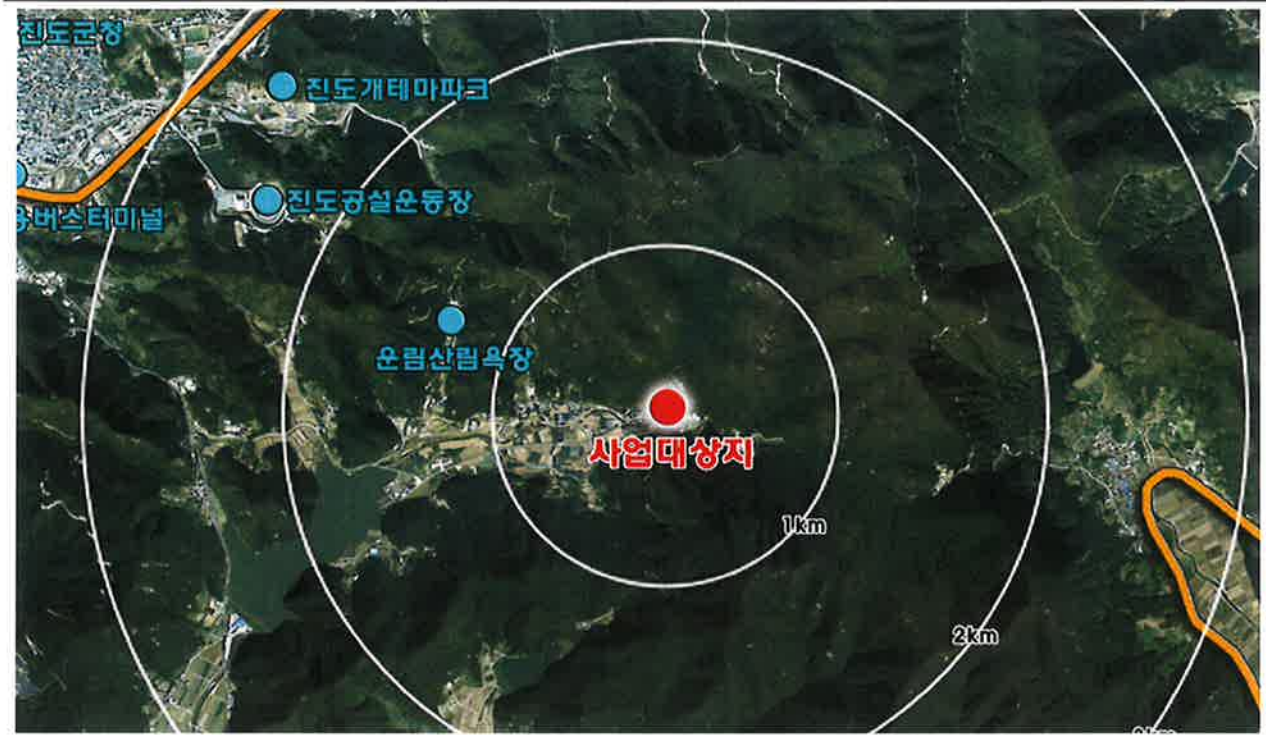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원	문화공원	의신면 사천리 80번지 일원	-	증)10,178	10,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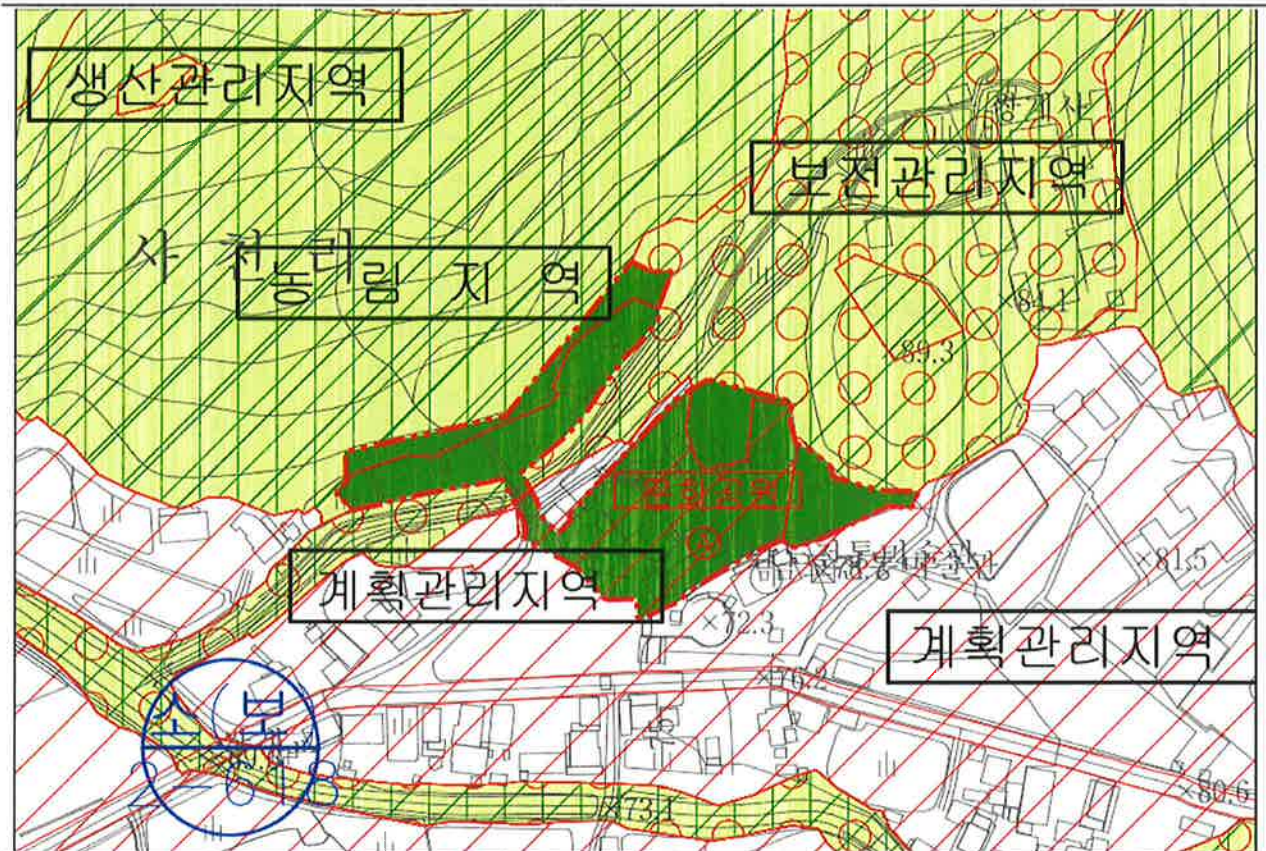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원	○ 문화공원 신설 A=10,178m ²	○ 남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운림산방 일원의 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함

6. 위치도 및 도면

위치도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023-44
----------	---------

제출년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주요골자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 정 (A)	기 정 (B)	증 감 액	
			(A-B)	%
합 계	548,032,304	463,243,721	84,788,583	18.30
일 반 회 계	538,222,781	453,624,921	84,597,860	18.65
특 별 회 계	9,809,523	9,618,800	190,723	1.98

의안내용 : 첨부

【첨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합 계	548,032,304	463,243,721	84,788,583	18.30	-	
일반회계	538,222,781	453,624,921	84,597,860	18.65	-	
특별회계	9,809,523	9,618,800	190,723	1.98	-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548,032,304	463,243,721	84,788,583	-	-	
일 반 회 계	538,222,781	453,624,921	84,597,860	-	-	
특 별 회 계	9,809,523	9,618,800	190,723	-	-	
특 별 회 계	소 계	9,809,523	9,618,800	190,723	-	-
	상 수 도	8,341,815	8,341,815	-	-	-
	의료급여기금	722,916	672,785	50,131	-	-
	자활기금	599,907	603,000	△3,093	-	-
	주민소득 지원기금	29,034	1,200	27,834	-	-
	주택사업	71,796	-	71,796	-	-
	간척사업	44,050	-	44,050	-	-
	농공지구 조성사업	5	-	5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기금회계	22,885,137	22,173,313	711,824	3.21%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22,885,137	22,173,313	711,824	-	-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8,790,125	8,725,556	64,569	-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58,452	58,426	26	-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206,627	188,415	18,212	-	-	
재 난 관 리	2,514,496	1,985,106	529,390	-	-	
식 품 진 흥	84,950	84,948	2	-	-	
문 화 진 흥	6,213,183	6,122,556	90,627	-	-	
통합재정안정화	4,017,031	4,008,294	8,737	-	-	
체 육 진 흥 기 금	1,000,273	1,000,012	261	-	-	

